

2025.02

공인회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2025.04.29

황인태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없다.
- ②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없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은 해당 회사 재무제표 작성할 책임이 있다.**

-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 까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선위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법」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 대표이사과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은 해당 회사 재무제표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선위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법」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제출 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기타 외감회사
		주권상장법인 등	기타	
감사인	제출 의무	○	○	○
	미제출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사유 공시		×
증선위	제출 의무	○	×	×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만료 다음 날까지 증선위에 사유 제출 · 사유를 자본시장법 방식에 따라 공시 		×

감사보고서 제출

-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포함)·증선위 및 KICPA에 제출.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이 증선위 및 KICPA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증선위와 KICPA는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열람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 증선위에 제출. 다만,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선위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회사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 ⑥ 주식회사가 「상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 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 ⑦ 회사의 주주등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 가능,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 발급 청구 가능.

감사보고서 제출

- 감사인 : 감사보고서를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포함) · 증선위 및 한공회에 제출
-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감사인은 증선위 및 한공회 감사보고서 제출 생략
- 회사 : 「상법」에 따라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증선위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적힌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 생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감사보고서를 회사, 증선위, 그리고 KICPA에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 감사보고서를 회사,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거래소
- 회사가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감사인이 증선위와 KICPA에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 대체
- 감사인이 증선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체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 제출자	일반 외부감사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감사인 (감사보고서)	회사 (재무제표)	감사인 (감사보고서)	회사 (재무제표/사업보고서)
회사	제출	-	제출	-
증선위	제출 ¹⁾	¹⁾ 감사인 제출 감사보고서로 대체	²⁾ 회사 제출 사업보고서로 대체	²⁾ 회사 제출 사업보고서로 대체
KICPA	제출	-	²⁾ 회사 제출 사업보고서로 대체	-
금융위				사업보고서 제출 ²⁾
거래소				사업보고서 제출 ²⁾
열람	증선위 KICPA	-	증선위 KICPA	-
비치·공시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공고	-	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	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정기공시(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the DART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ebsite interface.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main menu with the following structure:

- 본문: 2025.03.11 사업보고서
- 문서목차
 - 사업 보고서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I.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2. 회사의 연혁
 - 3. 자본금 변동사항
 - 4. 주식의 총수 등
- 첨부: 2025.03.11 연결재무제표 (highlighted), 감사의감사보고서, 내부감시장치에대한감사의견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highlighted), 영업보고서, 정관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detailed view of the '연결 재무제표' section, with the following content:

삼성전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재무제표 작성 등

재무제표 작성 책임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업무 집행 직원)
대리작성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및 소속 CPA는 회사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행위 금지· 회사는 감사인 및 소속 CPA에게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 행위 요구 금지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①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CPA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
- ④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자는 등록 이후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
- ⑤ 금융위는 등록된 감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증선위로부터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회계법인
등록회계법인 등록	금융위원회
등록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 충분한 인력, 예산, 그 밖의 물적 설비 3.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
등록유지	등록회계법인은 등록 이후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등록취소	<p>금융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한 감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 증선위로부터 업무정지 수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감사인별 감사가능 회사 구분

회사 종류	회계법인		감사반	개인공인회계사
	등록	비등록		
주권상장회사	○	×	×	×
대형비상장회사	○	○	×	×
금융회사	○	○	×	×
기타 외감회사	○	○	○	×
비외감회사 ¹⁾	○	○	○	○

¹⁾ 비외감회사의 경우 개별 법에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으며 감사인 역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에서는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인 즉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3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⑤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복사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②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시 감사인과 지배회사 권한

자료 요구 대상 및 사항		자료 요구 주체		
		감사인		지배회사
		별도감사	연결감사	
회사	회사(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언제든지	-	-
	회사(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특히 필요하면	-	-
	회사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
감사인	관계회사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		-
종속회사	종속회사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선위는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선위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선위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

5.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9. 법조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 포함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 교체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②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⑥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감사인지정 : 직권지정

1. 직권지정 기간 : 3개 사업연도 범위
2. 직권지정사유
<외부감사법 제11조 제1항>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2)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3)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4)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5)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등
 - 6)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7) 주권상장법인 중 증선위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관리종목)
 - 8)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감사인 직권지정

- 9)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직무를 위반하는 감사인을 해임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10)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된 회사
- 11)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4조>

-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2) 소속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3)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4)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5) 감사보수 미지급, 감사자료 미제출 등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6) 외부감사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경우)
- 7)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에서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주권상장법인 직권지정 사유

- 1)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2)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3) 소속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4)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지정 : 주기적지정

1.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
2. 주기적지정 기업
 - 1)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 2)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회사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3. 주기적지정 예외
 - 1) 증선위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 2)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감사인지정

- 지정시 감사인 선임 : 증선위가 감사인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재지정 : 회사 또는 지정받은 감사인은 사유가 있으면 증선위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 가능
- 회사가 증선위에 감사인을 재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감사위원회) 승인 필요
- 지정감사인 선임제한 : 회사는 직권지정 및 주기적지정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임 불가

직권지정과 주기적지정 비교

	직권지정	주기적지정
도입시기	1990년	2019년
적용대상	감리지적, 상장예정, 관리종목 등	상장,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
적용기업	소규모 기업이 많음	기업규모 분포 다양
도입이유	자유선임제 보완	독립성 제고, 감을 관계해소
감사인	회계법인	등록 회계법인 등
지정기간	적용 대상 기간	9년에 3년(6+3)
지정시점	사후적 지정	사전적 지정
지정기간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타국가 사례	없음	없음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품질관리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회사)	품질관리기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 책임자 : 회사 대표자 • 회사 대표자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 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 해당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설계 및 운영 책임 : 감사인 대표자 •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을 담당 이사 1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갖추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은 감사업무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시 법에서 정한 사항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 검토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법 사항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 수행 • 감사인은 검토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 	<p>증선위는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업무 수행. 감리 결과 감사업무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내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 권고, 그 이행 여부 점검 • 개선권고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 감사인이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선위는 미이행 사실을 외부에 공개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다른 감사인 선임	전기 감사인 해임
해당 회사	모든 외감회사	주권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
의견진술 기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증선위 보고	-	전기 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증선위 보고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및 감사인 해임/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회사종류	일반 외감회사*		주권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	
	회사	감사인	회사	감사인
해지 및 해임주체	회사	감사인	회사	감사인
직무제한 위반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직무상 의무위반	-	-	감사인 해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내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가 감 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해임 요청	-
감사기준 독립성 훼손 등	-	사업연도중 해지	-	사업연도중 해지
감사의견 관련 부당 한 요구나 압력	-	-	-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 월 이내 남은 사업연도 계약 해지
감사인 선임	2개월내	-	2개월내	-
증선위 보고	-	보고	지체없이 해지와 해임 보고	보고

36.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⑤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4조(주주총회등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등이 요구하면 주주총회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등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ㄷ.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ㄹ.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2.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인

나. 감사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다. 나목 외의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자유선임시 감사인 선임/선정

회사유형	감사위원회 의무여부	선임기한	감사계약 기간	감사인	감사인선정
주권상장	감사위원회 의무	사업연도개시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기타	D+45일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1
대형 비상장	-	D+45일	3년	회계법인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
금융회사	감사위원회 의무	사업연도개시전	3년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기타	D+45일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
비상장 주식회사	-	D+45일	1년	회계법인/감사반	감사
유한회사	-	D+45일	1년	회계법인/감사반	감사
					사원총회*2
					회사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단 감사를 두지 않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사가 선임

*2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

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L.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 요청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 및 감사인 해임/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회사종류	일반 외감회사*		주권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	
	회사	감사인	회사	감사인
해지 및 해임주체	회사	감사인	회사	감사인
직무제한 위반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지체없이 감사계약 해지	-
직무상 의무위반	-	-	감사인 해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내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가 감 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해임 요청	-
감사기준 독립성 훼손 등	-	사업연도중 해지	-	사업연도중 해지
감사의견 관련 부당 한 요구나 압력	-	-	-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 월 이내 남은 사업연도 계약해지
감사인 선임	2개월내	-	2개월내	-
증선위 보고	-	보고	지체없이 해지와 해임 보고	보고

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ㄷ.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장기감사 공인회계사 교체의무화

이사 업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이사는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금지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p>동일한 이사는 회사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금지</p> <p>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한 이사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 감사업무 수행금지</p>
CPA 업무제한	<p>회계법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함</p>

장기감사 공인회계사 교체의무화

			1	2	3	4	5	6
회계 법인	주권상장	이사	○	○	○	xxx	xxx	xxx
		회계사	○	○	○	×	○	○
	대형비상장	이사	○	○	○	xxx	xxx	xxx
		회계사	○	○	○	○	○	○
	금융기관	이사	○	○	○	xxx	xxx	xxx
		회계사	○	○	○	○	○	○
	외감회사	이사	○	○	○	○	○	xxx
		회계사	○	○	○	○	○	○
감사반	주권상장	-	○	○	○	×	○	○
	외감회사	-	○	○	○	○	○	○

×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소속 CPA 3분의 2 이상 교체

37.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ㄹ.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그리고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특례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 회사
등록회계법인(제9조의2)	○	-	-
감사인은 회계법인에 한정(제9조1항)	○	○	○
동일 이사 연속 4개 사업연도 감사업무 금지(제9조5항)	○	○	○
연속 3개 사업연도 감사를 한 이사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 금지(제9조5항)	○	○	○
회계법인은 소속CPA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 3분의 2 이상 교체(제9조6항)	○	-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제10조3항)	○	○	○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그리고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특례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 회사
지정감사인, 감사계약해지, 감사인 해산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제10조3항)	○	○	○
감사위원회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미설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제10조4항)	○	○	○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미설치 경우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10조5항)	○	○	○
감사위원회가 미설치 경우 감사는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후 문서로 정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 필요 인력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제10조6항)	○	○	○
감사위원회 미설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제11조1항1호)	○	○	○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그리고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특례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 회사
주기적지정	△*	-	-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더라도 회사 및 감사인은 증선위에 보고하여야(제12조2항)	○	○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감사위원회가 해임 요청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제13조2항)	○	○	○

* 코넥스는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

주권상장, 대형비상장, 그리고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특례

	주권 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금융 회사
독립성 위반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하여야(제13조3항)	○	○	○
다른 감사인 선임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라 전기감사인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14조1항)	○	○	○
감사인이 3년 연속하는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한 경우에도 감사의견 관련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감사계약 해지 가능(제15조2항)	○	○	○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업무 제한(제29조4항)	○	○	-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 ⑤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감리업무 등

감리주체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목적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신뢰도 제고
감리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 2.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품질관리기준 준수 감리 품질관리수준 평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 결과 감사업무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기한을 정하여 감사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 권고, 이행 여부 점검 • 개선권고사항 외부에 공개 • 감사인이 개선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이행 사실 외부에 공개
규정 제정	증권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증권위의 심의를 거쳐 정함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선위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선위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공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관련 공제회·준비금·기금·보험

	CPA법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소속 CPA 제외)	회계법인		
명칭	손해배상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손해배상책임보험
종류	1. 보험가입 or 2. KICPA 공제사업 가입	-	1) 기본적립금, 2) 연간적립금, 3) 추가적립금 :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or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시 기본적립금은 적립하여야 하나 연간적립금은 적립 불필요	
공동 기금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PA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 · KICPA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ICPA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 수행 	
적립 및 운용	-	회계법인내 유보 ⇒ 해 산시 한공회 예치	공동기금은 KICPA에 적립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용	
유의 사항		금융위 승인없이 손해 배상외 다른 용도 사용 금지	회계법인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KICPA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금지, 압류 또는 가압류 금지	

38.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⑤ 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감리가 개시된 경우 위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과징금 비교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과징금 부과대상	회계법인 또는 CPA가 <u>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u> 을 하여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u>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회사 관계자 : 회사 위법행위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 못한 경우 • 감사인 :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u>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작성한 경우
부과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 : 5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 :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 위반금액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회사 관계자 :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감사인 :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과태료, 과징금 및 벌금 비교

	과태료	과징금	벌금
개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불법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대체의 금전적 제재	범죄인에 대한 금전지불 의무 부과 형벌
부과주체	행정청/법원(이의제기시) 증선위	행정청 금융위	법원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 ②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 ⑤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어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 ④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회계법인 : 인원구성

(1) 이사 : 이사 3인 이상, 3인 이내 대표이사

- 회계법인은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
 -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
 -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감사 또는 증명 하는 경우 : 대표이사 문서에 회계법인 명의 표시 기명날인
- 이사 자격 :
- ① 사원(주주)이어야 하며,
 - ② 일부직무정지를 포함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이 아니어야 하며
 - ③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회계법인의 사유 발생 당시 이사였다면 등록취소 후 3년 혹은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 ④ 외국공인회계사는 이사가 될 수 없음

회계법인 : 인원구성

(2) 소속공인회계사 :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

- 이사가 아닌 CPA는 직무정지처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이 아니어야 함
- 일부직무정지기간 중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나 소속공인회계사 경우 일부직무정지기간 중에도 소속공인회계사로서 업무 가능

(3) 사원 : 회계법인의 사원(주주)

- 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공인회계사 3인 이상
- 사원 탈퇴사유 : ① 공인회계사 등록이 취소된 때, ②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을 때, ③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4) 구성원

- 회계법인은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 상근 공인회계사 유지
- 회계법인 이사와 소속 CPA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계법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됨
-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 금지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금 지	허 용
한국 공인회계사 고용 금지	국내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 수행
한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 금지	사무소 개설
한국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수익 분배 금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소속 외국공인회계사로 고용
회계법인 이사 금지	회계법인 사원 가능
국내 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 금지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 허용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
2개 이상 회계법인에 고용되거나 직책 겸직 금지	-
연중 180일 이상 국내체류 의무화	-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제37조의2(분할·분할합병)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을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⑥ 회계법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없다.

분할 · 분할합병

- ①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 가능
- ② 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계법인과 합병(분할합병) 가능
- ③ 분할(분할합병)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작성하여 사원총회 결의
-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 가능
- ⑤ 회계법인이 금융위로부터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 불가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
 -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포함)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39.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⑤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 ② 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
- ③ B공인회계사는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甲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 ④ C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乙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C공인회계사는 乙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乙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소 개설) ①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CPA 기타 권리와 의무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함
-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됨
- 구성원으로서 KICPA 회칙 준수
-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1개 사무소 개설만 허용.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직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 동시에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
-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사무소에 비치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CPA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대여 금지
-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 금지
- 계쟁권리(係爭權利) 양수 금지
-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 금지
- 주의할 점 : 위의 사항들은 모두 CPA가 지켜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
- 위에 설명한 규정들은 금융위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에게도 그대로 적용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로 될 수 있다.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 포함)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외국공인회계사
-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 ③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소속공인회계사)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외국공인회계사 포함)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허용 및 금지되는 행위

금 지	허 용
한국CPA 고용 금지	국내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 수행 가능
한국CPA(회계법인)와 업무 공동 처리 금지	사무소 개설
한국CPA(회계법인)와 수익 분배 금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소속 외국공인회계사로 고용
회계법인의 이사 금지	회계법인의 사원 가능
국내 CPA(회계법인)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 금지	해당 회계법인에 50% 미만 범위내에서 출자 허용,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
2개 이상 회계법인에 고용되거나 직책 겸직 금지	-
연중 180일 이상 국내체류 의무화	-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③ B공인회계사는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甲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제21조(직무제한)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 계약 체결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업무 금지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자산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 회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
 -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 나. 자산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지배인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 역할 해당 업무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공인회계사는 금지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감사고객에게 제공 금지 업무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2. 내부감사업무 대행 3.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4. 자산·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①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② 자산 등의 매도·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단, 부실채권 회수 목적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체 구성원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는 가능.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협의체 구성원과 이해관계가 많은 CPA(회계법인)는 실사 등의 업무는 금지.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6. 보험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7.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8.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감사고객에게 제공 금지 업무

- 업무제한 규정은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동일
-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제공 금지
- 금지 된 업무 이외의 업무는 감사고객에게 제공가능
- 내부통제절차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금지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
-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 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C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B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C공인회계사는 B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B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직무제한) ①공인회계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 포함)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 포함)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직무제한 : 감사금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지분관계>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감사 가능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
<채권채무관계>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직무제한 : 감사금지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고용관계>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 혹은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공인회계사 또는 배우자 혹은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 수행 직원으로 한정)	
-	과거 1년 이내에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 임있는 담당자 포함)에 있는 자

40.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⑤ 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①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의대여 등 금지

대상	C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대여 금지
	CPA &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행위 알선 금지
계쟁권리 양수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 양수 금지 	
부정청탁 등 금지	<p>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직무를 행할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 금지 	

정답

35	3
36	2
37	2
38	4
39	5
40	3